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은경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치매예방에 관한 교육·홍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오산시 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11월 2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은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425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17일

발의의원 : 한은경 의원

찬성의원 : 장인수,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치매예방에 관한 교육·홍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라.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오산시 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6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치매관리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7조, 제1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오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 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 ·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 단체 · 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 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 · 교육 · 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단체 등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비용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 · 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 · 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오산시 보건소에 치매예방

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안내 및 대리
8.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
9.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10.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구축
11.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12.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9조(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산시 치매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
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11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치매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의료인
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치매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치매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체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80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시민들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지원센터”란 오산시민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 연계,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오산시 치매지원센터”(이하 “치매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치매지원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오산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치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업무
2.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3. 치매 조기검진에 관한 업무
4. 치매검진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5. 치매예방·발견·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6. 치매관련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강화에 관한 업무
9. 치매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와 관련하여 노인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치매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오산시 내 또는 인접한 의료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

례」에 따른다. <개정 2016. 7. 19>

- 제6조(운영규정)** ① 시장은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탁받은 자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탁받은 자는 치매지원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위탁받은 자는 치매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위탁받은 자는 치매지원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 ③ 위탁받은 자는 관계법령과 운영규정 및 위탁협약사항,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위탁받은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위탁받은 자는 매년 사업운영 계획서와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사업운영에 대한 보고서와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수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와 종사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 및 노인성 질병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치매지원센터장,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 「오산시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㊱ 부터 ㊳ 까지 생략